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274 발의연월일: 2020. 9. 28.

발 의 자:서영교·윤재갑·신정훈

오영환 · 최형두 · 김병기

오영훈 · 임오경 · 김민철

양정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스쿨미투 운동으로 사회 전반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으로 교육 분야 성범죄 문제들이 점차 대중적 경각심을 일으켰지만, 아직까지도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 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학교 구 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대학 내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법 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9조의3(성희롱・성폭력피해상
	담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
	생 등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ㆍ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
	력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
	<u>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